



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

[시행 2018. 12. 20.] [법무부예규 제1202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법무부(국적과), 02-2110-4326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(이하 '외국국적 동포'라 한다)이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지침은 외국국적 동포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
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

제3조(의제규정)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국 국적 동포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국내 신청자격) 외국국적 동포로서 이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하게 입국·체류 중인 때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5조 (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) ①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.

1.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·제적등본
2.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·제적등본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,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
3. 8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·제적등본,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,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,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
4.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

②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.

1.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·제적등본
2.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·제적등본,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,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,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
3.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

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있어 본인,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·제적등본에 표시된 성명, 생년월일이 여권 기타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의 친척관계확인 등 적절한 방

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.

제6조(관계기관 협의)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신원조회, 범죄경력조회, 체류동향조사 및 귀화적격심사 등 국적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1. 북한에 유학 또는 주재한 경력이 있는 자
2. 공산당, 소속국가의 군대·정부기관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
3. 기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7조(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)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서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(순국선열 및 애국지사)를 말한다
- ③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
- ④ 제1항에서 친족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5조 및 국가유공자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.

제8조(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신청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) ① 출입국·외국인청장,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장, 출입국·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(이하 '청장등'이라 한다.)은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고 그 신청을 한 경우에 그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한 후 제4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배우자
2. 자녀 및 그 배우자

③ 청장등은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불법체류 상태이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결합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출입국사범처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제4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밀입국자, 위·변조여권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(폐쇄된 경우를 포함한다)되어 있는 자
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배우자, 자녀 및 그 배우자
3.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국적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

④ 청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체류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6.방문동거(F-1)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한다. 다만,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방문동거(F-1) 이외의 자격

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⑤ 청장등은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출국조치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재검토기한) 법무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1202호,2018.12.18.>

이 예규는 2018. 12. 20.부터 시행한다.